

受 信 : 大田廣域市議會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 委員長

題 目 : 大田廣域市青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
관한 書面 動議書 提出

위의 大田廣域市青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
案에 관한 書面同議書를 大田廣域市議會 會議規則 第25條의 規定에
의하여 別添과 같이 提出합니다.

添 附 : 大田廣域市青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
관한 書面動議書 1부 끝.

動議者 : 金 善 奎 議員 
의 1 人

(贊成者 署名 別添)

贊成議員名單

大田廣域市青少年自立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案

動 議 書

1. 提 案 理 由

- . 青少年自立事業支援基金의 效率的인 增殖效果를 위하여 高率의 金融商品으로 預置도록 明文規定하고
- . 獎學生으로 選拔·決定된 者에 대하여는 學士管理를 總括하는 大田廣域市 教育監에게 그 名單을 通報도록 함으로써 二重受惠防止등 基金의 效率的인 管理를 기하도록 하고자 함.

2. 主 要 骨 子

- . 基金은 別途의 計座로 管理도록 함 (案 第7條 第1項)
- . 基金은 高率의 金融商品으로 預置도록 함 (案 第7條 第2項)
- . 獎學生으로 選拔된 者는 大田廣域市 教育監에게 그 名單을 通報도록 함 (案 第9條)

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 (청소년 자립기금)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 제2항의 내용중 “이자율이 높은예금”을 “고율의 금융상품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2항의 내용중 “이를”다음에 “대전광역시 교육감과”를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 (기금관리)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(청소년 자립기금)구좌로 관리하여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금은 은행법, 농업협동조합법. 단기 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으로 예탁한다.</p>	<p>제7조 (기금관리) ① ----- 별도의 계좌 (청소년자립기금)로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고율의 금융상품 -----</p>
<p>제9조 (대상자추천 및 선발) ①(생략)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 은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 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.</p>	<p>제9조(대상자추천 및 선발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 이를 대전광역시 교육감과 -----</p>